

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여 규정

제정 1977. 2. 17
개정 1983. 6. 8
개정 1987. 9. 21
개정 1988. 10. 24
개정 2011. 12. 20
개정 2012. 4. 4
개정 2012. 10. 16
개정 2015. 1. 20
개정 2018. 1. 16
개정 2019. 3. 19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가 제정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치과의료봉사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2. 4. 4)

제 2 조(상의 명칭과 수여) 본 상의 명칭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이라 칭하며 상패와 부상으로 수여한다.(개정 2012.10.16)

제 3 조(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(신설 2015. 1.20)

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되며, 간사는 대외협력이사가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.
1. 협회 이사 및 대외협력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한 자
2. 학계, 개원가, 유관단체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

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조(수상인원) 본상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개정 2011.12.20, 2015. 1.20, 2019. 3.19)

제 5 조(수상자격) 수상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(개정 2011. 12.20, 2015. 1.20, 2018. 1.16)

1.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
2. 치의학의 개발연구에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
3.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

제 6 조(수상후보자선정) 수상후보자 또는 단체의 선정은 지부 추천, 공모등의 방법으로 한다.(개정 2015. 1.20)

제 7 조(구비서류)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, 시상 1개월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 1.20)

1. 공적조서 1통
2.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
3.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 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제 8 조(시상일자 및 장소) 시상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다.(개정 2015. 1.20)

제 9 조(심사결과제출)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협회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(개정 2015. 1.20)

제 10 조(수상자 결정) 수상자 또는 단체의 최종결정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(개정 2015. 1.20)

부 칙

1.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회정관 및 상 수여규정에 의한다.
2. 기타 시상에 관한 제정사항은 본상 제공자와 협의 결정할 수도 있다.
3.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